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5월 5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은 5일(화) 12시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044-203-5750), 김수진 사무관(044-203-5751)
김완기 FTA정책기획과장(044-203-5740), 김파라 사무관(044-203-5742)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기대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 5.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응웬 땀 중(Nguyen Tan Dung) 총리 임석 하에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다.

*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
-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된 FTA 기준으로 약 73.5%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을 통해 “한-베트남 FTA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

* 한-아세안 FTA('07.6월 발효) : 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간 FTA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 한·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품목 양허 현황>

주요 품목(관세율)	양허유형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10년 철폐
믹서(25%)	5년 철폐
화장품(10~25%)	10년 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내 철폐
차량용 엔진(5~25%)	3~7년 철폐
화물차(5톤~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10년 철폐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3~10년 철폐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7~10년 철폐

○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이미 개방

□ 또한,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189억불, 9,111건('14년 누계, 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국은 베트남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 진출 중

※ FTA 세부 내용은 <첨부 2> 참고

【한-베트남 FTA의 추진 경과】


-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 이후,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집중적인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타결을 선언했으며,
 - 기술협의를 법률검토를 거쳐 3.28일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을 완료했다.

【향후 계획 등】

-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현재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진행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한편, 윤상직 장관은 서명식 전 베트남 **응웬 쩐 중 총리**를 예방해 한-베트남 FTA를 평가하고, 원전 협력 및 우리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건설 참여 등 양자간 산업·통상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 참고 첨부

- [첨부1] 한-베트남 FTA 주요 협상 경과
- [첨부2]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 [첨부3] 한-베트남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 [첨부4] 한-베트남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첨부5] 한-베트남 교역·투자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 044-203-5750) 또는 FTA정책기획과 김원기 과장(☎ 044-203-5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첨부1 한-베트남 FTA 주요 협상 경과

구분	주요 협상 내용	
1차	'12.9.3~4 (서울)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2차	'13.5.22~24 (베트남 하노이)	▪ 우리측의 협정문안(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 13개 분야) 제시로 문안에 바탕을 둔 본격 협상 개시
※ VIP 방배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13.9월)에서 "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3차	'13.10.16~18 (부산)	▪ 상품 분야의 본격적인 양허안 협상에 돌입 ▪ 별도 챕터 미합의 분야(지재권, SPS, 전자상거래, 경쟁)에 대한 전문가 대화 진행
4차	'14.3.12~14 (베트남 호치민)	▪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방식 관련 절충점 논의 등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 마련
5차	'14.5.20~23 (서울)	▪ 상품 양허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서비스 양허 관련 조건부 positive 방식에 공식적으로 합의
6차	'14.7.28~8.1 (베트남 호치민)	▪ 상품 양허 3차 오퍼를 교환하고,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개시
7차	'14.9.29~10.2 (서울)	▪ 상품 양허안을 바탕으로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논의하고, 협정문상 잔여 쟁점 합의 도출 노력 ▪ 서비스 양허 관련 논의를 추가 진행하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SPS 분야의 경우 협상 가속화
※ 베트남 당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14.10월)시 "한-베 FTA 연내 타결" 목표 재확인		
8차	'14.11.17~21 (베트남 다낭)	▪ 분과별 협상을 통해 협정문 관련 쟁점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한편, 상품 양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석대표 협의를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경쟁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 도출
9차	'14.12.8~10 (서울)	▪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실질타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 정상회담(14.12.10일)에서 "한-베 FTA 실질타결 선언"		
	'15.1월~3월	▪ 기술협의를 법률검토
※ 한-베트남 FTA 가서명 (15.3.28, 서울)		

첨부2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1 개요

□ 한-베트남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17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구분	챕터 명
상품관련	① 상품, ② 원산지(PSR 포함),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 ④ 무역구제, ⑤ SPS(위생·검역), ⑥ TBT(기술장벽)
서비스·투자	⑦ 서비스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⑧ 투자
규범·협력	⑨ 지재권, ⑩ 경쟁, ⑪ 투명성, ⑫ 전자상거래*, ⑬ 경제협력
총칙	⑭ 일반조항, ⑮ 예외, ⑯ 분쟁해결, ⑰ 제도 및 최종 조항

*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전자상거래)

2 상품

◆ 양측은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추가 자유화 달성

○ 협상 대상 : 한-아세안 FTA의 민감·초민감품목*

* (한) 1,063개(4.7억불) - (베) 1,226개(21.2억불)

○ 추가 자유화(12년 수입액 기준) : (한) **94.7%(+3%p)** ↔ (베) **92.4%(+6.1%p)**

☞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를 보호하면서도 주력·유망 수출 품목의 베트남 시장접근 개선

□ (상품) '12년도 수입액기준 한국 **94.7%(+3%p)**-베트남 **92.4%(+6.1%p)** 자유화 수준 합의

○ (베트남측) 베트남측은 이미 對韓 수입의 **86.3%**(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9%는 3년, 2.9%는 5~10년, 나머지 0.1%는 15년 관세 철폐하여 **92.4%의 자유화율** 달성

○ (우리측) 우리측은 이미 對베 수입의 **91.7%**(수입액 기준)를 양허, 1.3%는 즉시, 1.0%를 3~5년, 나머지 0.8%는 7~15년(3개 품목 15년) 관세철폐하여 **94.7%의 품목 개방**

□ (베측 시장개방)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면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등은 3년, 변압기,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확보

○ 일-베 EPA 발효('09년)로 대기업보다 베트남내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하였으나,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가전·자동차부품·화장품 등)으로 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 확보

□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한-아세안 FTA 양허 수준 유지), △저율관세할당(TRQ), △장기 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음

-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마늘(건조/냉동)·생강(미분쇄·미과쇄(건조/기타), 과쇄·분쇄(신선·냉장/건조/기타))·돼지고기(삼겹살/기타(냉동)) 등은 10년 철폐, 천연꿀·팥·고구마전분은 15년 철폐

* (그 외 주요 농수산물 양허 현황) 호도(탈각(신선/건조), 킬라피아(냉동), 연어(냉동), 전갱이(냉동), 기타 돔(냉동), 기타게(냉동), 기타 새우류(염장), 다시마(염장), 참치가공품(2개 세번)은 10년 철폐, 맥주 5년 철폐

○ 對베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1.4억불)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를 제공

* 초기 물량 10,000톤, 이후 5년에 걸쳐 15,000톤까지 증량

3 서비스 · 투자

◆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준 이상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후속협상 약속을 통해 서비스 추가 양허 및 투자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
 - (양허)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
 - ※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건설 서비스 관련 배측 양허 개선
 - (금융 부속서)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금융 서비스 위원회) 확보
 - (통신 부속서) 우리 통신 사업자의 對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 이상의 규범 확보
 -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서비스 무역 원활화를 위한 자연인의 일시입국·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마련
- (투자)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투자협정상 의무에 대한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 배측의 경험 부족을 감안하여 한-베 FTA 발효 1년 후 완결하도록 하는 Built-in 조항을 도입하되,
 - 향후 동 유보 협상 시점에서 배측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the most advanced level)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4 규범 · 협력 등

◆ 한-아세안 FTA 플러스 수준의 무역 촉진적 규범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1 원산지 & 통관

- (원산지규정)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업종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
농수산물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中 택일)의 비율 제고 (예: 가당연유, 유당 등)
섬유 · 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예: 커튼, 모포 등)
기계, 전기 · 전자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예: 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 기어박스, 차축 등)

- (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 등의 경우,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을 신규 선정(HS 6단위 기준)
- (원산지절차/통관)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의 편의 도모
 - (사전심사) 상대국 수출자·생산자도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산지증명)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한-아세안 FTA 200불 이하)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② 무역구제

- (양자세이프 가드) 한베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 (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
 -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
- (무역구제위원회)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

③ 무역기술장벽 (TBT)

- 전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 채널 마련

④ 위생 및 검역 (SPS)

- 당사국간 SPS 조치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기회 모색, SPS 챕터 이행 점검 및 정보교환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

⑤ 전자상거래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에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 *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

⑥ 지식재산권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보장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 * 이용자가 권리자의 사전허락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 가능
 - (상표권)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 합의
 - 유명상표는 등록 전에도 보호하여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방지하고, 제품·포장의 형상도 상표로 보호
 - (특허권) 특허공지에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발명이 사전에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된 출원의 구제 방안 마련
 - (부정경쟁) 타인의 상표, 명성, 품질 등과 오인하게 하는 상업 활동을 금지
 -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규정
 - *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규범을 형성

7 경쟁

- ① **절차적 공정성·투명성·비차별·적시성**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 ② **국영기업·국가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③ **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등 규정
-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 최종 의결서 서면 송부, 법집행시 부당한 지연 금지 등 우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또한, 국영기업 및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간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

8 경제협력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농림수산업)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규정 및 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 협력 (기타)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9 투명성

- ① **협정 관련 조치(안)의 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 보장**, ② 다른 쪽 당사국 요청시 해당 조치(안)에 대한 정보 제공, ③ **행정처분시 합리적인 통지 및 방어 기회 제공**, ④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행정적 구제 절차 설치 또는 유지**

10 분쟁해결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긴급시 단축 시한 별도 적용), **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부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첨부3 한-베트남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구분	한국				베트남			
	품목수(개)		2012 對베수입액(천불)		품목수(개)		2012 對한수입액(천불)	
전체	12,232		5,717,642		9,471		15,494,076	
한-아세안 FTA	11,169	91.3%	5,244,642	91.7%	8,245	87.1%	13,375,246	86.3%
즉시철폐 (유무관세 포함)	91	0.7%	72,330	1.3%	65	0.7%	179,932	1.2%
3년 철폐	216	1.8%	12,931	0.2%	16	0.2%	296,688	1.9%
5년 철폐	134	1.1%	43,140	0.8%	47	0.5%	19,070	0.1%
7년 철폐	7	0.1%	2,998	0.1%	29	0.3%	16,747	0.1%
8년 철폐	-	-	-	-	6	0.1%	8,137	0.1%
10년 철폐	48	0.4%	40,195	0.7%	106	1.1%	405,553	2.6%
15년 철폐	3	0.02%	242	0.004%	3	0.03%	11,173	0.1%
소계	499	4.1%	171,836	3.0%	272	2.9%	937,301	6.1%
총합계	11,668	95.4%	5,416,478	94.7%	8,517	89.9%	14,312,547	92.4%

첨부4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양허 단계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 바지/아우터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여성용 수트/자켓/바지/스커트, 잠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카프, 장갑,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건전지, 경유 등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전거부품, 삼푸, 헤어리스, 필름, 쇠고기(식용살육(신선/냉장), 혀(냉동), 간장(냉동) 등),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 치즈, 양송이 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추출물, 곡수, 곡류가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마태 조제품, 망어(신선/냉장), 납치(냉동), 가자미(냉동), 피조개(신선/냉장), 껏장어(활어), 가자미(신선/냉장), 건조어란, 제재목 등	216	3년 철폐	16	기타양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원동기 등
자/고밀도에틸렌, 에틸렌트산비닐, 선박용압축정화식 엔진, 선박용 부품, 고무마(냉동), 과일주스, 감자(조제/냉동), 잼, 두부, 향미용 조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과, 인삼음료, 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냉동), 복어(냉동), 피조개(냉동), 성게(냉동), 조제완어,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기타),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혼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선박부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선기기, 카스테레오, 컴퓨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 철폐	29	가열난방기(철강재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	-	8년 철폐	6	닭고기
베어링,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쇄, 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 신선/건조/기타), 호도(탈각/신선-건조), 돌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틸라피아(냉동), 섬유판, 합판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음파,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발열, 냉장고, 라디오, 등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순면직물, 합성수지 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꿀(중작용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499	소계	272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272	

첨부5 한-베트남 교역·투자 현황

□ 교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5,760 (46.7)	7,805 (35.5)	7,149 (△8.4)	9,652 (35.0)	13,465 (39.5)	15,946 (18.4)	21,088 (32.2)	22,352 (6.0)
수입	1,392 (50.5)	2,037 (46.4)	2,370 (16.3)	3,331 (40.5)	5,084 (52.6)	5,719 (12.5)	7,175 (25.5)	7,990 (11.4)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2	14,361
총교역액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30,342

※ '14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제8위 교역파트너 (수출 6위, 수입 15위)

□ 투자

《단위 : 백만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베트남의 투자	0.5 (7)	0.4 (9)	1.0 (13)	0.8 (15)	5.0 (15)	1.7 (14)	2.1 (7)	0.9 (4)	14.7 (108)
한국에 대한 투자	2,780 (840)	1,911 (828)	964 (642)	2,158 (773)	1,509 (726)	940 (752)	1,460 (1,031)	2,100 (1,248)	18,908 (9,111)

※ '14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한국은 베트남 1위 투자국,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

□ 한국의 對베트남 10대 교역품목 현황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순위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1	집적회로반도체	2,605	11.66	직물제의류	1,683	21.07
2	무선통신기기부품	2,186	9.79	편직제의류	469	5.87
3	합성수지	1,188	5.32	기타섬유제품	252	3.15
4	편직물	978	4.38	무선통신기기부품	251	3.14
5	인쇄회로	703	3.15	기타목재류	248	3.11
6	열연강판	577	2.58	스포츠화	235	2.94
7	기타플라스틱제품	417	1.87	기타신발	216	2.71
8	화물자동차	367	1.64	새우	206	2.58
9	직물제의류	322	1.44	원유	192	2.41
10	자동차부품	321	1.44	센서	178	2.23
	소계	9,664	43.27	소계	3,930	49.20
	전체	22,333	100.00	전체	7,989	100.00